

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
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3. 7. 1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
(2013년 7월 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복지국장 김찬재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에서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에서 숙박업 제외(안 별표 1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「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환경부의 「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」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관련 규정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나. 주요내용을 보면

조례 제2조 별표 1의 ‘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부과대상 업종 ‘에서 숙박업소 제외

다. 「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4호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중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을 제외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2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」의 개정(2013. 5. 10)되어 종전
까지 1회용품 규제대상이던 “숙박업(첫솔,치약,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
규제)”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
함.

2. 주요내용

가.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숙박업 제외

- 목욕장, 숙박업소(객실 7실 이상)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
무상으로 제공한 때 ⇒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
무상으로 제공한 때
-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
목욕장인 경우 ⇒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
-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인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
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⇒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
-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⇒ 삭제

나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3.6.7 ~ 6.19, 12일간) : 의견없음
- 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- 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
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
금지급조례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
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
10조,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
한 법률」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”으로, “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4조
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”로, “과태료부과、징수”를 “과태료
부과、징수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10조”를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(이하
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”로 한다.

제3조 전단 중 “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2조제1항에 따라”
로, “10일이상”을 “10일 이상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2조제1항에
따라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”을 “제3조에
따른 의견청취 결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
에 따른”으로 하며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다만 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신고일로부터”를 “신고한 날부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발부하고, 신고자에게는 소정의”를 “발급하고, 신고자에게는 정해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의 규정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도과한”을 “지난”으로, “발부하고, 신고자에게는 소정의”를 “발급하고, 신고자에게는 정해진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당해년도 예산범위내”를 “해당년도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0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

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별표 1 부과대상란 중 나항 “목욕장, 숙박업소(객실 7실 이상)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”를 “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한 때”로 한다.

별표 1 부과대상란 중 나항 (1) “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”를 “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”로 한다.

별표 1 부과대상란 중 나항 (2) “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인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”를 “영업장 총면적 300평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”로 한다.

별표 1 부과대상란 중 나항 (3) “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” 및 관련 과태료 및 포상금액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진술하지
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
거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다 .이 경우
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
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
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
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
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
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(변
경)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
하여야 한다.

제5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 ①
(생 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
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
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
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
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
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고포상금 지급기준) 1회용품
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
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
다.

제8조(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
태료 부과) ①、② (생 략)

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
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
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
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.

-----따
라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5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 ①
(현행과 같음)

②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.

제7조(신고포상금 지급기준) -----
----- 사람 --

-----.

제8조(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
태료 부과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- 정해진 -----

-----.

제9조(신고포상금 제외 대상) 누구나 1 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

2. 3. (생략)

제10조(신고자)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고자”라 한다)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.

② 같은 날(00:00~24:00) 같은 장소(매장)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.

제11조(신고방법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(위반일시,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)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, 회용품 또는 사진(비디오 테이프 포함)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)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 신고

제9조(신고포상금 제외 대상) -----

----- 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-- 대해서-----
----- 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 21조제 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신고자) ①-----
----- 사람 -----

----- 대해서----- .

② -----
----- 2명 -----
----- .

제11조(신고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 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) ①-----

⑦、⑧ (생략)

제14조(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) ①、② (생략)

③ 신고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, 현금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)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(생략)
2.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
3. ~ 8. (생략)

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(운용규정)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.

⑦、⑧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-----

제15조(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) ① -----
----- 각 호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제10조제2항에 따라 -----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

제18조(운용규정)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부과징수 규칙」 -----

현 행					개정안				
〔별표 1〕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					〔별표 1〕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				
부 과 대 상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 이후	포상 금액	부 과 대 상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 이후	포상 금액
나. 목욕장, 숙박업소(객실 7실이상)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한 때					나.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한 때				
(1) 객실 5 0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	50	100	200	10	(1) <u>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</u>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	50	100	200	10
(2) 객실 2 0 이상 50 미만인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	30	50	100	5	(2) <u>영업장 총면적 300평미터</u>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	30	50	100	5
(3) 객실 2 0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	10	30	50	3	<u>삭 제</u>	<u>삭제</u>	<u>삭제</u>	<u>삭제</u>	<u>삭제</u>